[illegible]

* 문서명 : 비대위 공개자보 수정안 (검토용)
* 작　성 : 2000. 6. 5. 전희경

대학원 총학생회는 최근 대학원 사회의 기본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나 규약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원 사회의 회복은 오직 원우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사건을 공개합니다.

1. 사건 경과

피제소자 A씨는 지난 1999년 ~~9~~5월 경 같은 과 동기인 제소자 B씨에게 구애의 내용을 담은 편지와 꽃을 전달한 이래, B씨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편지, 시, e-mail, 전화 등 원치 않는 행위를 계속하여 B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B씨는 견디다 못해 이를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에 제소하였고, 지난 2000년 1월 철학과 학생회는 A씨와 B씨의 진술 모두를 철학과 내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여 B씨와 철학과 학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공개사과문에서 A씨는, 거부 의사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착각이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함으로써 인격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 2월 초에 철학과 학생회가 이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해결을 중단한 이후, A씨의 괴롭힘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누가 봐도 도저히 상식적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편지와 전화, e-mail 공세를 계속하였습니다.

B씨는 학교 안에만 들어서도 불안증에 시달리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며,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지난 2000년도 1학기에 휴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성적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임의로 B씨의 수강신청을 대신 하여 휴학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경에는 B씨의 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으로 찾아와 만날 것을 요구하며 두 시간 동안 전화로 협박하는 일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지난 2000년 5월 9일,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 활동 경과

* 사법적 절차 자제

2000년 5월 9일 B씨의 사건 접수 이후 당일 있었던 회의를 통해, 본 사건이 대학원 사회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원 총학생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내부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건 개요와 증거자료 및 진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 양자에 대한 공정한 고려와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5월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제소자인 A씨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의 진술은 상당 부분 커다란 불일치를 보였으며, 특히 A씨는 제소자 B씨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조차 부인하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B씨를 비난하여, 도저히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는 기구 명칭을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스토킹사건 해결을 위한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전환하고, 대학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3. <비대위>의 입장

외계

스토킹

스토킹

폭력 → 성폭력

호빵

(가사여경 땀.

화여레.

<비대위>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제소자 및 피제소자 양자와의 면담, 그리고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신력 있는 판단에 근거하여,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A씨는 작년 ~~8~~5월경부터 10개월 동안, B씨가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여 차례 편지, 시, 꽃, e-mail, 전화를 계속 하여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힘으로써,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한 개인의 인격, 프라이버시,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스토킹"**이다. 이는 과거 A씨가 2000년 1월 15일 작성한 사과문에서도 스스로 인정한 바이며, 제소자 B씨가 제출한 편지, 시, e-mail 등 증거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성희씨

(2)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임의로 수강신청을 하여 휴학을 취소하려 하였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구애를 계속하여 B씨가 도저히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환경형 성폭력의 성격을 띤 **"학습권 및 학내생활권의 침해"**이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임의 수강신청은 두 차례 있었던 A씨와의 면담에서도 재차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며, B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휴학 사유가 A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4. <비대위>의 요구안

위와 같은 사건 규정에 기반하여, <비대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A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개사과문은 2000년 6월 12일 오후 2시까지 <비대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① 가해사실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 ② 대학원의 기본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 ③ 추후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2) 학교 당국은 정당한 학습권과 학내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B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 A씨에게 즉시 정학, 강제휴학,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 6월 9일 대학원 교학처장님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비대위>는 원우의 한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학업에도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행위를 제재할 만한 규칙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이 지난 2000년 1월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결을 찾지 못한 것은, 원우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장치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원 사회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고통받아 온 B씨의 피해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원우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지지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시려면 :

⇒ <비대위> 특설 게시판 (http://members.tripod.co.kr/bidaewi) 로 접속하셔서 지지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은 지면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스토킹사건 해결을 위한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